

# EU의 공급망 실사법 입법 동향

**Christophe Clerc**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Paris) 교수,  
금융시장, 기업법, 노동법 및 거버넌스 전문 변호사)

## ■ 서론

2013년,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인근에서 부실한 상업용 건물인 라나플라자(Rana Plaza)가 붕괴되어 1,13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건물의 소유주들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후 건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 피해자들이 유럽과 북미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의류회사의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참사는 기업에 공급망 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제에서 비롯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산업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상위 보편적 원칙(이하 ‘상위 보편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을 사용하기 위해 빈번하게 자회사,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를 이용한다. 그런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르면, 공급망의 최상층에 위치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하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위 보편적 원칙의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

라나플라자 참사 발생 후, 2017년 프랑스에서는 “실천감독의무(Duty of Vigilance)”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대기업에 이 문제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은 EU 차원에서 실사 의무 프레임워크 신설을 검토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관련한 EU의 움직임

직임은 EU 집행위원회가 2018년 3월 8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계획」<sup>1)</sup>과 유럽의회가 2018년 5월 4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보고서」<sup>2)</sup>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21년 3월에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에 공급망 실사의무 부과에 관한 법안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sup>3)</sup>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관한 EU 지침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최종 채택될 경우 EU 내 모든 기업에 실사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기업에 실천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과 EU 차원에서의 입법 진행상황을 분석한다.

## ■ EU 공급망 실천감독의무 지침 채택의 중요성

국제질서는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유지된다. 첫째는 경제원칙으로 19세기에 수립된 무역 및 투자의 자유, 재산권의 우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20세기 후반에 수립된 상위보편적 원칙으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 9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 국제노동기구(ILO)의 8개 핵심협약,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 2000년 UN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 환경 관련 협약 및 조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세계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은 적절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경제원칙이 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가지 원칙 간의 조율이 실패한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기업법의 핵심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착취적 관행으로 이익을 취하는 주주를 상대로 소

1) European Commission(2018), “Renewed Sustainable Finance Strategy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March 8, <https://ec.europa.eu> (검색일: 2021.10.20).

2) European Parliament(2018), “Report on Sustainable Finance”, <https://www.europarl.europa.eu> (검색일: 2021.10.20).

3) 이 결의안에는 유럽의회가 원하는 지침 초안이 첨부되어 있다. European Parliament(2021),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https://www.europarl.europa.eu> (검색일: 2021.10.20).

---

송을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주에게 기본적으로 법적 면책권이 주어진 셈이다. 이 원칙은 이중으로 지배주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자회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 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전가되지 않으며, 주주들은 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

- 법인격 분리의 원칙에 따라 기업은 공급업체와 하청업체의 착취적 행위 또는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외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셈인데, 이 메커니즘이 지배주주들에게 세 번째 보호막으로 기능하고 있다.

상위 보편적 원칙과 주요 경제원칙을 조율하기 위해,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ubi emolumentum, ibi onus*)”라는 오래된 라틴어 격언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가진 직간접적 면책권에 해당하는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경제운용에 있어,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천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업의 생산 전반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며, 경제적 관점과 윤리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타당한 방안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실천감독의무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다.

- **외부효과**: 상위 보편적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보통 세금이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공급망의 경우에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이 그 외부효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으로 외부효과를 교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실천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혁신**: 상위 보편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특히 자사 상품과 업무공정의 지속가능성 및 안전과 관련하여 혁신을 강요당하게 된다.
- **불공정 경쟁**: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없다면, “모범 시민”으로 행위하는 기업은 불공정 경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연성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적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선호**: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경제 이론이 경제 주체들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자유시장의 운용 방식은 상위 보편적 원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수많은 소비자, 노동자 및 투자자의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천감독이 의무화되어 투명성이 증대되면 소비자, 노동자 및 투자자는 상호 보편적 원칙을 위반하는 기업과 거리를 두기가 더 쉬워진다.

윤리적 관점에서 실사의무화 범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보호**: 법의 주요 인류학적 기능 중 하나는, 라나플라자 참사를 예로 들면 공급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을 다국적 기업과 같은 강자의 비위행위 또는 태만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 **동등한 가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인권의 기본원칙이다. 동등한 가치를 뜻하는 “이소티미아(isotimia)”는 동등함을 의미하는 iso와 가치·존엄성·존중을 의미하는 timia라는 고대 그리스어의 조합이다.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timia)할 자를 존경하라”(로마서 13장 7절, 약 서기 55년)라고 말하면서 사용한 바 있다. 이소티미아는 단순한 권리의 평등(고대 그리스어로는 동일한 권리라는 뜻의 이소노미아(isonomia)가 있음)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지만, (인간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등에 미치지 못한다. 이소티미아의 개념에 따라, 하청업체 또는 공급업체 노동자의 가치는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소비자 가치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의 가치보다 낮지 않다. 실사의무가 부과되면 이소티미아가 상당히 증진될 것이다.

## ■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

프랑스에서 2017년 3월 27일에 공포된 실천감독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sup>4)5)</sup>은 기업이 자사 및 그 자회사,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에서 상위 보편적 원칙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중에서 가장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프랑수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임기(2012.5.15~2017.5.14) 막바지에 채택되었다. 2012년 도미니크 포티에(Dominique Potier) 의원이 하원의원, NGO 및 변호사들로 초당적 실무단을 구성하고, 의회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보고관(rapporteur)” 역할을 담당하며 입법과정 전반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노동조합들은 입법과정 내내 이 법안을 지지하였다. 경영계에서는 입법 초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쳤으나 초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은 프랑스에 소재한 노동자 5천 명 이상(직간접 자회사의 인력 포함)을 고용한 대기업과 전 세계적으로 1만 명 이상(직간접 자회사의 인력 포함)을 고용한 프랑스 기업에 적용된다.

### 실천감독계획

이 법의 적용대상인 기업은 본사 및 직간접 자회사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관계를 맺은 하청업체나 공급업체의 활동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산업안전보건, 환경(상위 보편적 원칙)에

4) 프랑스 상법 조항 L.225-102-4에 삽입됨.

5) 편집자 주: 종래 “due diligence”는 “실천점검의무” 또는 “실사의무”로 많이 번역되어 왔다. 2017년 프랑스는 “Loi dur le devoir de vigilance”법을 제정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devoir de vigilance”는 영어의 “due diligence”를 번역한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며, 이것을 영어로 다시 번역한 것이 “duty of vigilance”이다. 이 셋은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국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그런데 이 글의 필자를 포함하여 일부 논자들은 프랑스법의 “duty of vigilance”는 “due diligence”보다 한결음 더 나아간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EU법과 독일법은 “due diligence”에 해당하지만, 프랑스법은 “duty of vigilance”에 해당한다고 구별한다.

필자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뜻에서, “due diligence”는 공급망 실사의무”로 번역하고, “duty of vigilance”는 실천점검의무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실천감독의무”로 번역하였다.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실천감독 조치들을 포함하는 “실천 감독계획(vigilance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실천감독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 위험 파악
- 자회사,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평가 절차
- 위험을 완화하고 심각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기업 대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위험 존재 또는 발생에 관한 경고 메커니즘 구축.  
이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경고 메커니즘이 직원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간주된다.
- 실시된 조치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제도

기업들은 세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실천감독계획 작성에 참여해야 하며, 실천감독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실천감독계획과 이행보고서를 공개하며 (주주총회에 제출되는)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재무정보 공시의무에 포함되는 정보 외에, 실천감독계획이나 그 이행에 관해서 법정 감사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실천감독의무는 단순한 실사를 넘어서는 의무이다. 실사는 대체로 매년 1회 정도의 시행으로 단순히 위험을 파악하는 데에 그칠 수 있지만, 실천감독의무는 기업이 위험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완화 및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다.

## 피해자 구제제도

프랑스 실천감독의무법에는 몇 가지 유용한 구제책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구제신청은 기업의 내부(직원, 관리자 및 주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법에 따라 실천감독을 받는 대상인 공급업체와 하청업체의 이해관계자도 모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프랑스 기업이 중요한 하청업체에 대한 실천감독의무를 준수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피해를 본 하청업체의 직원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책임에 대

해서는 프랑스 민법 제1240조 및 제1241조에 명시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따라 태만과 실수를 포함해 과실이 있고(프랑스의 경우 실천감독의무 위반), 이로 인해 피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과실과 피해의 인과관계(모기업은 실천감독의무를 이행하여 하청업체가 보건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가 입증될 때 책임이 인정된다.

둘째, 노조와 NGO를 포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모기업이 실천감독계획을 수립, 공표 및 집행하여 실천감독의무를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모기업이 의무 준수 지연에 대한 일일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을 명령에 포함할 수 있다.

## ■ EU 차원의 입법 진행 현황

기업에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EU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EU 차원에서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EU 출범 당시 조약에서 “국제사회에서 EU의 활동은 연합의 설립, 발전 및 확대를 이끌어 내었고, 더 넓은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원칙으로서 민주주의, 법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평등과 연대의 원칙, UN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따른다(EU 조약 제21조(1)항)”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EU의 핵심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할 것이다.

또한 EU 회원국에서는 다양한 국가별 이니셔티브를 반영해 더 확대된 법률이 제정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사 대상을 제한한 법이 제정되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2019년 공급망에서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실사 대상이 확대된 법이 제정된 국가도 있는데, 독일에서는 2021년 6월에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사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부터는 노동자 3,000인 이상 기업, 2024년부터는 노동자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등록 사무소나 본사가 독일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된다.

- 실사의무의 일환으로, 기업은 자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효과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적절한 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분석 결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기가 밝혀지면, 기업은 간접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기업 경영진은 자사의 인권 전략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야 하며, 지난 회계연도의 실사의무 이행 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업은 내부 이의제기 절차나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여 자사의 사업활동 및 직간접 공급업체의 사업활동에서 인권침해 또는 환경의무 위반이 발생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과 달리, 독일법은 기업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기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이 법은 독일 노동조합과 NGO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 및 NGO들은 “중대한 법적 권리”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법집행은 연방 경제 및 수출관리공단(BAFA)이 관할한다. 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액의 최고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년간 공공조달계약 입찰이 제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에 공급망 실사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대대적인 의견 수렴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 대해 47만 3천 건이라는 놀라운 정도로 높은 지지 의견이 접수되었다. NGO가 지지를 표명한 비율이 높지만, 이 법에 대한 지지가 NGO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기업 및 기업단체의 60%도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과 EU 차원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데 지지를 표명하였다.



---

## ■ EU 지침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제안

공급망 실사법 제정을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 적용대상 범위

EU 지침은 적용대상 기업을 최소한 두 그룹(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제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소화된 약식 제도가 필 요하다. 포괄적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의 명단은 공개되어야 하며, 기업의 실사계획은 특정 온 라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소재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를 EU로 한정 하지 않고 (독일법의 예를 따라) EU 내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들과 [영국의 2015년 현대 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의 예를 따라] EU 내에서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도 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실행 조치

EU 지침에는 단순히 실사 및 보고 의무만이 아니라 주의의무(duty of care)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 기업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의 사례를 보면, 기업에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것 은 기업이 스스로 실시한 1차 평가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합 리적인 방식이다.

EU 지침에는 가장 중요한 개별 위험에 대해 그 이행 조건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 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 위험이 큰” 국가의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를 이용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실사계획에 대해서는 기업에 자율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비재무정보 공시보고에 포함되는 관련 이슈<sup>6)</sup>에 대해서, 구체적 “분류 체계(taxonomy)”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sup>7)</sup> 이에 따라 공공감독기구를 신설하여 점진적으로 실사계획을 표준화하고 정의된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 법에 관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회계 규칙이 만들어지는 데만도 1세기 이상이 걸린 것처럼, 이러한 기준들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 피해구제 및 제재

프랑스 실천감독의무법의 사례에서처럼, 구제신청은 기업의 구성원(직원, 관리자 및 주주)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실사 적용대상인 모든 법인(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이해관계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청업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노조나 NGO 또한 기업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이나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지 않거나 계획 또는 계획이행보고서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가장 명백한 법 위반 시 형사처벌
- 공급업체나 하청업체가 상위 보편적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청업체의 이익 환수
- 실천감독의무를 고의 또는 심각하게 위반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조치
- 상위 보편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공급업체 및 도급업체에 대한 EU 시장 접근 배제

6) European Commission(2020), “Inception Impact Assessment”, January 30, <https://ec.europa.eu> (검색일: 2021.11.1).

7) European Commission(2020), “Sustainable Finance: TEG Final Report on the EU Taxonomy”, March 9, <https://ec.europa.eu> (검색일: 2021.10.20).

실천감독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해자(예를 들면 피해를 본 하청업체 직원)에게 모기업의 의무 불이행, 피해 발생,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항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기업이 실천감독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거나 계획의 내용에 정확성이 부족해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가하여 기업이 실사의무를 준수했음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 거버넌스와 통제

지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거버넌스와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실천감독계획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포괄적 제도 적용대상 기업에는 “실천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① 경영진, 직원, 주주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가령, 40%·40%·20%의 비율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지니고, ② (전문가 임용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재정을 갖추며, ③ (경영진, 감사, 직원 등) 관련 인사 및 문서 접근을 통해 적합한 법적 수단과 기업의 실천감독의무 이행에 관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공감독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 또는 회계감독기구가 각 관련 분야에서 규범 수립과 그 이행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처럼, 공공감독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실천감독의무 적용대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 보편적 원칙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조율된 기준을 개발하고, 모범 관행을 장려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규제를 도입하고, 실천감독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양식 및 절차를 제안하며,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위한 인증 절차를 수립하고, 규정을 집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KLI**